

2024년 경기도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 육성 지원 공고

경기도 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을 발굴하고, 기업 수요에 맞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『2024년 경기도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 계획』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4년 2월 5일

경기도지사 ·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경기도 내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에 대한 시제품개발, 제품규격 인증 등 기술사업화 수요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도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□ 지원대상 : 2021. 2. 28. 이전부터 경기도 내에서 소재·부품·장비를 생산·제조·개발하고 있는 중소기업

※ 법인사업자면 법인 설립연월일, 개인사업자면 사업자 등록일, 공장등록일 기준

□ 지원규모 : 19개사 내외(기업당 최대 75백만 원)

※ 총 사업비의 70%이내 도지원금 지원(기업 부담금 30% 이상)

□ 지원내용(요약) : 기업 수요 맞춤형 통합 지원

- 기술/공정혁신 : 기술도입 및 보호, 공정개선·혁신 등
- 제품혁신 : 시제품개발, 지적권, 제품규격인증 등
- 판로개척 : 홍보물 제작,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

□ 지원절차

| 지원 단계 | 세 부 내 용 | 주 체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공고('24.2월) | · 「'24년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사업」 공고 | 경기도,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(이하 경과원) |
| 사업신청 / 서류검토('24.2월) | · 사업신청 · 서류 적격성, 지원자격의 적합성 등 검토 | 신청기업 경과원 |
| 서류평가('24.3월) | · 서류평가 : 재무상태, 고용증가 등 | 경과원 |
| 발표평가('24.4월) | · 전문가 평가를 통한 우수과제 선정평가 · 계획의 적정성, 기술성,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| 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 평가위원회 |
| 범위반기업 조회('24.4월) | ·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관련 범위반사항 조회 | 경기도 |
| 원가분석('24.4~5월) | · 시제품 개발 등 해당 시 원가분석(생략 가능) | 외부 전문기관 |
| 과제선정('24.5월) | · 평가를 모두 통과한 기업에 대해 지원예산규모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기업 및 후보기업 확정 | 경기도, 경과원 |
|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('24.5월) | · 원가분석 결과 반영된 사업계획서 제출 ▶ 제출서류 : 공문, 수정사업계획서, 견적서 등 | 주관기관 → 경과원 |
| 협약체결('24.5월) | · 선정기업(후보기업) 오리엔테이션, 과제 승인 및 협약 | 경과원 |
| 사업비 지급('24.6월) | · 협약에 따라도 지원금 지급 (이행보증보험 발급 필수) | 경과원 → 주관기관 |
| 진도점검('24.8월) | · 추진현황 점검(서면 또는 현장방문) | 주관기관 ↔ 경과원 평가위원 |
| 사업완료('24.11월) 및 최종점검/평가('24.12월) | ·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출 및 수정제출 · 과제 추진실적 및 현장점검(최종평가) | 주관기관 ↔ 경과원 평가위원 |
| 사업비 정산('25.1월) 및 지정서 수여('25.1월) | · 위탁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 및 잔액 반납 · 사업 완료한 선도기업 지정서 수여 | 주관기관 ↔ 경과원 경기도 ↔ 선도기업 |
| 결과보고('25.2월) 및 사후관리('25.2월~) | · 성과관리 | 주관기관 ↔ 경과원 |

2. 신청자격

기준일 : 접수 마감일(2024. 2. 29.) 기준

신청자격

| 유형 | 자격조건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필수조건 (①~⑤ 모두 충족) and | ①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상 경기도 내 '주사무소' 또는 '등록공장' 설치·운영 ※ 법인사업자면 법인 설립연월일, 개인사업자면 사업자 등록일, 공장등록일 기준 ② 소부장의 개발 제조 매출이 50% 이상 ※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을 받지 않은 기업도 신청가능 ③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요건 충족 기업 ④ 제조업 업종 영위기업 ※ 사업자등록증명 내 제조업 명시 ⑤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개발부서) 설치·운영 |
| 선택조건 (①~③중 1개이상 충족) | ①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② 직전년도 총 매출액 대비 R&D 지출 비중 2% 이상 ③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상 |
| 지원제외 | ① 경기도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, 대중소기업 기술교류 지원사업,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(2021~2023) ② 2024년 경기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(스타기업 육성사업,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)에 선정된 기업 ③ 중앙정부 사업에 기 선정기업(월드클래스300/플러스, 소부장 강소기업 100, 소부장 으뜸기업, 글로벌 강소기업) ④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동일한 사항으로 참여(과제 진행) 중인 기업 |

3. 지원금액 및 기간 · 사업비

지원금액 및 내용 : 19개사 내외(기업당 최대75백만원)

| 구분 | 지원항목 | 세부내용 |
|---------|-------------|---|
| 기술·공정혁신 | 기술도입·보호 | 국내외 기술 도입, 기술보호(보안, 유출방지, 임치제도 등) |
| | 디지털 공정혁신 | 스마트·디지털화, 로봇, IoT, 디지털 안전, 공정개선·혁신 등 |
| 제품혁신 | 시제품 개발 | 개발기술 제품화, 샘플제작, 금형제작, 지그, 목업 등 제작 지원 |
| | SW Licence | SW설계 맞춤형지원(EDA Tool), 설계자산(IP), 디자인하우스, CAD 등 |
| | 지식재산권 | 국내·외 특허 출원,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|
| | 제품규격인증 | 국내·외 제품규격 인증획득, 시험·분석, 컨설팅 지원 |
| | 정부사업 참여 컨설팅 | 기업진단, 기업수요 맞춤 사업 도출, 컨설팅(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) 지원 |
| 판로개척 | 기타 사업화 지원 | 시장정보분석(특허·시장동향), 자율과제(제품개선 관련 활동, 기타 컨설팅 등) |
| | 홍보 강화 | 홍보물, 홍보동영상 제작, 온·오프라인 광고 지원 |
| 판로개척 | 국내외 전시회 참가 | 국내외 전시회 참가, 기업홍보 및 투자유치, 신기술·신상품 동향파악, GMS,(해외마케팅 대행), 바이어 발굴 등 |

1) ★ 총 사업비의 50% 이상을 시제품개발 항목에 사업비를 편성 및 사용(소진) 원칙

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. 11. 30. 이내

□ 기업부담금 : 총 사업비의 30%(현금) 이상 필수 부담

[참고 1] 사업비 계상 예시

| 구 분 | 도지원금 | 기업부담금 | 총 사업비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사업비 | 75,000,000원 이내 | 32,150,000원 이상 | 107,150,000원 |
| 계산식 | 도지원금 ≤ (총 사업비 × 0.7) | 현금 ≥ (총사업비 × 0.3) | - |

※ 기업부담금은 만원단위에서 올림 적용(예시, 32,142,857원 ⇒ 32,150,000원 작성)

4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

- 온라인 전산 등록 및 제출 : 2024. 2. 5.(월) ~ 2. 29.(목) 15:00까지

□ 신청방법(온라인만 가능)

- 경기도 공정R&D 과제관리시스템(<http://pms.gbsa.or.kr>) 회원가입 후 전산 제출

① 과제책임자 및 사업담당자 회원가입(2인 필수)

- 접수 시, 신청기관의 과제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·제출

② 과제관리 ⇒ 접수관리 ⇒ 신청서 ⇒ 등록

③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파일 압축하여 첨부파일 업로드

- 모든 신청서류는 신청기관 직인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스캔본 업로드

*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를 권장하며 접수 마감일 15시 이후 접수 불가

* 제출된 계획서 및 서류, 전산에 등록된 내용 등이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

*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○ 구비서류 목록

| 연번 | 서 식 명 | 해당 서류 | |
|----|--|-------|-----|
| | | 필수 | 해당시 |
| ① |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(소정양식, 『붙임 1』 참조) | ○ | |
| ② |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※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※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/)에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| ○ | |
| ③ | 신청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(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) | | ○ |
| ④ | 기업부설연구소(또는 연구전담부서) 인정서 사본 1부 ※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(https://www.rnd.or.kr/)에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| ○ | |
| ⑤ | 개인정보 이용(제공·조회) 동의서(소정양식, 『붙임2』 참조) | ○ | |
| ⑥ | 2020년~2023년 확정재무제표 각 1부. ※ 2020년~2023년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'표준재무제표증명'필수 제출 ※ 선정기업은 2023년 확정재무제표 필수제출 (선정 후 별도 안내) | ○ | |
| ⑦ |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2022년 12월 귀속분, 2023년 12월 귀속분) 각 1부. ※ 종사자수는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 (근로소득)만 인정 ※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> My홈택스 > 세금신고내역 > 원천세 | ○ | |
| ⑧ |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. ※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| ○ | |
| ⑨ |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. (최근 1년 조회) ※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http://certi.kosha.or.kr) / 문의처 : 1644-4544 | ○ | |
| ⑩ | 소부장 매출실적 확인서(소정양식, 『붙임 3』 참조, 공인회계사/세무사 확인본) | ○ | |
| ⑪ |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. (소정양식, 『붙임 6』 참조) | ○ | |
| ⑫ | 공장등록증명서 사본(필수조건에 경기도 내 공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필수제출) 1부. | | ○ |
| ⑬ | 신청자격 중 선택조건(1개 이상 충족 필수)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각1부. ※ 연구전담요원 2명이상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인력 개발현황) ※ 2023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2% 이상(소정양식, 『붙임 4』 참조) ※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| | ○ |
| ⑭ |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(6. 평가기준 참조) | | ○ |

- 구비서류 제출 시, 파일별 연번 부여하여 제출(예) 1.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)
- 필수서류 누락 시 결격처리 되므로 제출 전 반드시 확인 바람

5. 지원제한

※ 지원(후보)기업으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,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

- 접수 마감일(2024. 2. 29.) 기준,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 -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
 - ② 민원야기, 임금체불, 환경오염,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
 - ③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
 - ④ 자본잠식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
 - ⑤ 휴·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 - ⑥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 - ⑦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2023년도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기업
 - ⑧ 2023년도 기준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
 - ※ ⑦~⑧ 항목의 경우 선정기업에 한하여 2023 재무제표 재확인 실시, 자격요건 미충족시 선정제외
 - ⑨ 대기업·중견기업
 - ⑩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 - ⑪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고시('24. 1. 19.)에 의거 법 위반사실이 2회 이상 있는 경우
 - ⑫ 경기도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, 대중소기업 기술교류 지원사업,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(2021~2023)
 - ⑬ 2024년 경기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(스타기업 육성사업,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)에 선정된 기업
 - ※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사업, 소부장 탄소중립 기술사업화와 중복선정 시, 기업 의사에 따라 하나의 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음
 - ⑭ 중앙정부 사업에 기 선정기업(월드클래스300/플러스, 소부장 강소기업 100, 소부장 으뜸기업, 글로벌 강소기업)
 - ⑮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동일한 사항으로 참여(과제 진행) 중인 기업

6. 평가기준

□ 적격심사

- 서류검토 :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, 중복성, 제재사항 등
- 현장조사(필요시) : 기술개발 인프라, 사업화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

□ 서류평가

- 재무상태(성장성, 수익성, 안정성 등), 고용증가 등
- 서류평가 및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기업 순으로 목표 지원기업 수의 2배수 이내로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
- 평가항목 및 배점

| 구분 | 계 | 성장성 | 수익성 | 안정성 | 윤리경영 | 고용창출 | 가산점 |
|------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평가항목 | 소계 | 매출증가율 | 영업이익율 | 부채비율 | 산업재해율 | 고용증가율 | - |
| 세부기준 | - | 3년간 CAGR ((22년도 매출액/ 20년도 매출액) ^(1/2)-1)×100 | 영업이익 /매출액×100 (22년도) | 부채총계/ 자본총계 ×100 (22년도) | 기업 산업재해율 대비 동종업계 산업재해율 차이 | 23년 상시근로자수 /22년 상시근로자수 ×100-100 | 1건당 1점 |
| 배 점 | 106점 | 30점 | 10점 | 20점 | 10점 | 30점 | 6점 |

※ 최근 3개년도(2021~2023)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

※ 성장성, 수익성, 안정성의 경우 2022년 기준 중소기업경영지표 평균지표 대비 등급평가

※ 고용창출의 경우 경기도 취업자수(고용) 증가율 대비 등급평가

[참고]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

- 가산점 적용기준

- ① 가산점은 건당 1점, 최대 6점으로 적용함
- ②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, 유효기간은 공고일[2024. 2. 5.]을 이후여야 함.

- 가산점 적용대상

- ① 경기도 핵심전략품목(「붙임 5」 참조)을 생산하는 기업
- ② 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(소부장넷 <https://www.sobujang.net/>에서 발급분에 한함)
- ③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기업(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)
- ④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선정기업(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)
- ⑤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기업(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)
- ⑥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종료 후 해당 아이টে으로 사업화 추진 중인 기업(2020~2022 선정기업)
- ⑦ 대·중견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구매이행 계획서 제출기업 「붙임 7」
- ⑧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(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)

□ 발표 또는 서면평가

-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한하며,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·평가
- **평가항목** : 계획의 적정성, 기술성, 사업성 및 파급효과 등

※ **법위반 1회 기업에 해당할 경우 최종 발표점수에서 20% 감점(2회 이상일 경우 지원 제외)**

법위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[별첨1 참고]

- **공고일 기준 2년 이내(2022. 2. 6. ~ 2024. 2. 5.)** 아래 각 분야별 법을 위반한 기업
(제한기준) :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, 과징금, 과태료
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, 고발건은 사실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
(공정분야) : 공정거래법, 하도급법, 표시광고법
(노동분야) : 근로기준법, 산업안전보건법
(환경분야) : 폐기물관리법, 대기환경보전법, 소음진동관리법, 물환경보전법
(납세분야) : 국세기본법, 지방세기본법

※ 심의·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기업 수와 기업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, 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, 선정 취소 (차순위 기업 선정)

7. 기타 공지사항

□ 사업에 참여하는 자(기업, 대표, 책임자 등)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

-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
-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, 개발 목표 등에 대한 공시
- 수행기업은 산출된 제품·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, 관련 성과활용조사 등을 위하여 3년간 경과원의 요청(조사)에 적극 협조해야 함.

□ 이행보증보험 가입

-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도지원금의 100%에 대해 협약 전 이행(지급)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(가입기간 : 별도 안내)
- 발급수수료는 사업비로 인정

□ 범부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(RCMS) 연계

- 사업비는 범부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(RCMS)를 통하여 가상계좌로 교부되며 선정기업은 RCMS 연계 가능한 참여은행의 계좌 및 필요시 법인카드(사업비전용카드)를 사용해야 함(필수사항)

□ 기업선정 취소

-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기업선정 취소 가능
 -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수행 내용이 상이한 경우
 - 제출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
 - 기업부담금 부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 -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
 -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종료시한 이내에 수행 완료가 곤란한 경우
 - 사업 신청일 이후, 사전지원제외(신청자격 상실)에 해당하는 경우

□ 부당지원수혜자 제재사항

- 도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의 부정사용(횡령 등) 적발시 지원금 전액환수 및 향후 경기도 지원사업에서 영구배제, 민형사상의 조치 등 실시
 - ※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준용

8. 문의처

| 전문기관 | 연락처 | F.A.X. | E-mail.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반도체기업종합지원센터 | 031)259-7022 | 031)259-7010 | autol@gbsa.or.kr |

※ G-PMS 시스템 문의 : 070-7549-3309

※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-mail로 문의바랍니다.

- [붙임]** : 1.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서식)
2. 개인정보 이용(제공·조회) 동의서(서식)
3. 소부장 매출확인서(서식)
4.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(서식)
5. 소부장 핵심전략품목 및 확인서(서식)
6.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입·이용 동의서(서식)
7. 대·중견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구매이행 계획서(서식)
8. 원가분석 세부시행 계산서(서식)

[참고1] : 소부장 산업의 범위 1부

[참고2] : PMS 사업신청 매뉴얼 1부

[별첨1] :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범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. 끝.

[별첨1]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

경기도 고시 제2024-22호

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

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,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「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“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. 1. 19.

경 기 도 지 사

1. 추진목적 :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2. 적용대상 :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
- (도내 기업) 주 사무소, 영업소,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
3. 적용사업 :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, 아래 제외·유예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
 - 가. 제외·유예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 및 상황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 사업으로 전환하여 적용될 수 있음
 - 나. 사업유형별 적용제외·유예사업
 - 1) (계도·개선사업)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
 - 2) (사업운영비·소액사업)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, 소액·다수기업 지원사업
 - 3) (비경쟁사업) 기업수요가 비 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
 - 4) (자금·융자지원 사업)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
 - 5) (시·군 매칭(보조) 사업)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라 시군 지원사업
 - 6) (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)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
 - 7) (투자유치 지원)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(인센티브) 사업
4. 위반사실 적용법률 :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분야 11개 법률
 - 가. 적용법률
 - 1) (공정)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
 - 2) (노동)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
 - 3) (환경)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
 - 4) (납세)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
 - 나. 위반 사실 적용 법률은 사업 부서별·사업 특성에 따라 지침·기본계획 상 추가 운영 가능

5. 위반사실 조회기간 : 사업 공모일(모집일) 기준 2년 이내
 - 가.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, 과징금, 과태료
 - 나.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, 고발건은 사실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

6. 사업참여 제한조건 : 법 위반 사실 확인시(1회 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 - 가.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(법위반사실여부 약약서(서식2) 내용과 상이) 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 - 나.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(사업별) 법 위반일 기준 사업 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

7. 법위반사실 확인 :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
 - 가. (공정)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법위반조회발급/법위반사실조회)
 - 나. (노동)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
 - 다. (환경) 기업 소재지 관할 시·군
 - 라. (납세)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

8. 이의 및 구제신청 :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(서식3) 제출
 - 가. 사업자선정위원회 등(실국 또는 수탁기관)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(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)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
 - ※ 기업의 권리구제,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
 - 나. 삭제

9. 제출서류 :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서식1), 기업의 법위반사실(부존재) 여부 약약서(서식2)

10. 고시 효력일 : 고시일 ~ 차기 고시일 전까지

11. 문의처 : 경기도 경제투자실 기업육성과(☎ 031-8030-2995)